



위탁계약상 영업비밀 보호의무 위반 및 부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7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4년(와) 제3030호 평성15년(와) 제230호
판결 일자	2004. 5. 20.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원고	쿠마리프트 주식회사		
피고	1. 유한회사 에스에스케이 엔지니어링, 2. A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2조 1항 7호, 14호, 3조, 4조, 민법 709조, 유한회사법 30조,		
영업 비밀	고객 명부		
키워드 (Keyword)	위탁계약, 영업비밀, 영업비방행위		

02 사건 개요

원고는 각종 승강기의 제조, 판매, 보수점검 및 대리점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회사는 승강기의 판매, 설계, 시공 및 보수 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유한회사이다. 또한 피고 A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가 보수점검 등 도급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1998년 8월에 체결하였으며, 2002년 2월에 피고는 본건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위탁계약에 따른 경업금지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 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피고는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상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로서의 고객정보가 아닌 독자적으로 수집한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 계약 종료 이후에 원고의 고객에게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본건 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의 고객정보는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이다.		고객정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영업비방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04 판결 요지

원고와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의 기밀'의 사용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업무상의 기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본건 고객명부를 기재한 고객명부의 등의 취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회사에 위탁하고 있던 고객정보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동 대장은 사무담당자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사무소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관리 되고 있었다. 이로 보건대 본건 고객정보는 객관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이 인식된 상태로 관리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피고회사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원고의 신용을 해하는 허위 사실을 원고의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으며, 본건 위탁 계약 중에 원고의 고객에게 직접 피고회사와 보수점검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위법이다.

05 Key Point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